



제 429국회 (정기회)
제 9 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방과후과정 외부강사등의 결격사유 마련 〉
■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647호)

2025. 11.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 상 열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방과후학교 외부강사등의 결격사유 마련 등	3
2. 개정안 부칙	1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문수 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10. 20.

3. 회 부 일 : 2025. 10.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방과후학교의 외부강사 선정 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제외하고는 강사 선정의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지만, 방과후학교가 30년 이상 운영되면서 교육당국의 강사 검증 기준과 절차는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었음.

그런데 최근 강사 등을 통해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하려고 하거나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일이 발생하였으므로, 결격사유 요건을 두는 등 방과후학교 강사 등의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과후학교 강사 등의 자격기준을 교육공무원에 준하도록 하고,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위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14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방과후학교 외부강사등의 결격사유 마련 등(안 제23조의4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의 채용 제한사유 및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방과후과정의 외부강사 및 위촉직 봉사자(이하 “외부강사등”이라 한다)가 될 수 없게 하고, “외부강사등”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계약해지 또는 해촉사유로 하며, “외부강사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교육장은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3조의4(외부강사등의 결격사유) 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및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방과후과정의 외부강사 및 위촉직 봉사자(이하 “외부강사등”이라 한다)가 될 수 없다.

	② 외부강사등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및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촉된다. ③ 외부강사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치는 제31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장”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외부강사등”으로, “제31조의2”는 “제23조의4”로, “퇴직”은 “계약 해지나 해촉”으로 본다.
--	--

나. 검토의견

1) 외부강사등에 대한 결격사유 적용

- 동 개정안은 참고사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33호)은 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전후 또는 휴업일 중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활동(초등학교의 경우 돌봄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포함함.)을 “방과후과정”으로 규정하면서, “방과후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지원계획

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방과후과정”의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정규수업 이후 내부 교원 또는 외부강사등이 운영하는 추가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학생 및 학부모가 희망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유·무상으로 참여하는 “방과후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바¹⁾, “방과후과정”은 교원이 아닌 “외부강사등”이 운영할 수 있음.

□ 한편, “외부강사등”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현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²⁾에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취업제한기간을 규정하

1) 통상 방과후학교를 통해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방과후과정이라고 지칭함.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각 호(제12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허가·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³⁾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취업제한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2의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 <생 략>
- ④ 제1항 각 호(제10호 및 제18호는 제외한다)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허가·등록·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 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⑦ 제1항제7호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항 제22호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 제5항에 따라 취업자등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경우, 그 취업자등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취업자등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1호의 유치원
 2. 제1항제2호의 학교 및 위탁 교육기관
 3. 제1항제2호의2의 학생상담지원시설 및 위탁 교육시설
 4. 제1항제19호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1항제21호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 ⑨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부강사등”에 대하여 법령상 별도의 경력요건과 자격요건이 없다고 설명하였음.

□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경우 전체 학생 중 늘봄학교⁴⁾ 참여율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생의 경우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20% 이상, 고등학생의 경우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30% 가까이 나타났는바⁵⁾, 공교육 중에서 선택사항인 방과후학교에 대하여 학생들의 참여율이 적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방과후 과정은 정규수업외의 교육 프로그램이므로 「교육공무원법」상 교원 등의 결격사유를 “외부강사등”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교육공무원법」은 교원 등이 재직하는 동안 ① 금품 수수(授受) 행위, ②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③ 학

4) 2024년도부터 초등학교 1학년 및 2학년을 대상으로는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늘봄학교’로 통합하여 운영 중임

5) [늘봄학교 참여 현황]

기준일	초1			초2			초1·2 합계		
	전체	참여	참여율	전체	참여	참여율	전체	참여	참여율
'25.3.28	325,290	274,387	84.4%	353,215	277,195	81.3%	678,505	551,582	81.3%

자료: 교육부 제공

[방과후학교 참여 현황]

기준일	초3			초4			초5			초6		
	전체	참여	참여율	전체	참여	참여율	전체	참여	참여율	전체	참여	참여율
'24.4.30	427,166	229,075	53.6%	422,581	201,866	47.8%	423,369	170,336	40.2%	467,772	155,432	33.1%

자료: 교육부 제공

기준일	중			고		
	전체	참여	참여율	전체	참여	참여율
'24.4.30	1,332,850	272,539	20.4%	1,304,325	379,042	29.1%

자료: 교육부 제공

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은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⁶⁾,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⁷⁾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6)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 금품 수수(授受)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7)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사람, ②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③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④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경우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⁸⁾

□ 이처럼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교원 등에 대한 채용 제한사유와 교육공무원⁹⁾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이하 “결격사유등”라고 한다)를 규정하

8)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9)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고 있는데, ①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산학겸임 교사 등을 임용하는 경우 국립·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5항¹⁰⁾을 각각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②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치원에서 교원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이 경우 국립·공립 유치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5항을 각각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¹¹⁾, “방과후과정”의 “외부강사등”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결격사유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¹²⁾, 이와 같이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경우 학생과 학부모가 보다 안심하고 방과후 학교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¹³⁾

□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에서는 교원이 금품 수수(授受) 행위 등으로 인하여 파면 등에 해당하는 사람의 채용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개정안에서는 파면 등이 없이 금품 수수(授受) 행위 등

10)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11) 「유아교육법」 제23조(강사 등) ①유치원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 유치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12) 그밖에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동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 4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13) 다만, 제안이유에서 설명하고 있는 “외부강사등”이 “방과후과정” 중 왜곡된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려고 하거나,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일이 발생한 경우에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규정들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만으로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공무원법」에 비해 권리의 제한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므로 「교육공무원법」과 같이 파면 등에 해당하는 경우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교육부는 방과후과정의 외부강사 등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교육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적용하려는 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이며¹⁴⁾, 다만 현행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이 있는 자는 방과후강사 활동을 할 수 없는데, 해당 범죄 전력 조치는 교육장이 대신할 근거가 없어 학교의 장이 실시하고 있으나¹⁵⁾, 개정안은 방과후강사에게 「교육공무원법」상 결격사유만 적용하고 있고, 「교육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은 제외되어 있는 바, 방과후강사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처에 대해서는 개정안 제3항이 적용되지 않아 학교에 업무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

14)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별도의 방과후학교 근거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임.

15)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④ 제1항 각 호(제12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허가·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견임.

2) 외부강사등에 대한 당연계약해지등

- 동 개정안은 “외부강사등”이 “결격사유등”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촉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당연계약해지등은 별도의 절차 없이 사유 발생 만으로 신분변동을 초래할 것으로 보임.
- 한편, 현재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이 동법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원의 채용 제한사유를 규정한 동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¹⁶⁾, 동 개정안에서는 교원의 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도 “외부강사등”의 당연계약해지등 사유로 규정하려고 하는바, 「교육공무원법」보다 권리의 제한 정도가 큰 것으로 보임.
- 또한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에서는 교원이 금품 수수(授受) 행위 등으로 인하여 파면 등에 해당하는 사람의 채용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개정안에서는 파면 등이 없이 금품 수수(授受) 행위 등 만으로도 당연계약해지등의 사유로 규정하려 는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¹⁷⁾.

16)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당연퇴직) ① 교육공무원이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17)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당연퇴직과 관련하여 당연퇴직은 공무원의 법적 지위가 가장 예민하게 침해받는 경우이므로 공익과 사익 간의 비례성 형량에 있어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

3) 외부강사등에 대한 당연계약해지 등

- 개정안은 “외부강사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3¹⁸⁾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학교의 장”은 “교육장”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외부강사등”으로, “제31조의2”는 “제23조의4”로, “퇴직”은 “계약 해지나 해촉”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범죄경력 등 조회를 학교의 장이 아닌 교육장이 요청하도록 하는데, 이는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경우 교육지원청을 두고 있지 않아 교육장이 없으므로, 교육장이 없는 교육청의 경우 교육감이 범죄경력 등 조회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필요하다는 의견임.

다고 하면서, 당연퇴직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헌법상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한 공무담임권 보장과 조화를 이루는 정도에 한하여 중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적이 있는바 [2020헌가8(2022.12.22.)], 참고할 필요가 있음.

- 18)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 ①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가 새로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의 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제2항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의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 안 부칙은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 개정안은 “외부장사등”의 결격사유와 당연계약해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등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내용으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¹⁹⁾, 개정안 심사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86

19)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